

#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## 심사보고

2025. 10. 24.  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 
행정문화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5년 10월 1일  
나. 제출자: 종로구청장  
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5일 원안 회부  
라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24일

#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정미선 문화환경국장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자매도시 주민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자매도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상호 교류 활성화 기여하고 상위법(박물관 및 미술관 진통법)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하고자 함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4조)  
○ 위원회 기능에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(대여) 삭제(안 제31조)  
○ 박노수미술관 관람료에 자매도시 주민 감면조항 신설(안 별표2)

### 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: 전문위원 최윤석**

○ 본 개정안은 종로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주민에 대하여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관람료를 감면하여 양 도시 주민에게 실적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종로구와 협약을 체결한 자매 도시 및 우호도시는 총 10개 도시로, 각종 문화·관광 시설에 대하여 안성시 등 3개 도시는 자매결연 도시에 30% 할인을, 고성군 등 5개 도시는 50% 할인을 하고 있으며, 나주시 및 전주시 또한 자매도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
종로구가 양 도시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을 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자매도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점, 양 도시의 문화교류 촉진은 물론,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, 양 도시간 호혜적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음

다만, 안 별표 2의 “종로구와 자매도시 체결한 도시 거주민 50퍼센트 할인”으로 규정하였는데,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자매도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, ‘자매도시’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‘우호도시’는 제외되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, 타 감면 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

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**

### **5. 토론 요지: 수정 동의(박희연 의원)**

## **6. 수정안의 요지:**

- 안 별표 2의 “종로구와 자매도시 체결한 도시 거주민 50퍼센트 할인”에서 자매도시를 자매·우호 도시로 수정

## **7. 심사결과: 수정 가결**

( 박희연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함 )

#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3353 관련
------------	----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5. 10. 24.  
발 의 자: 박희연 의원

### 1. 수정 이유

「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 
서 ‘자매도시’와 ‘우호도시’는 구분되는바, ‘종로구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 
추진계획’에 따르면 우호도시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므로  
관람료 할인대상을 ‘자매·우호도시’로 명확히 하고, 할인대상에 대한 법규  
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 내용

-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관람료 할인 대상 규정 보완(안 별표 2)

### 3. 수정안: 따로 붙임

##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]

###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관람료 (제7조 관련)

구분	금액		비고
	개인	단체(20명 이상)	
어 른	3,000원	1,800원	25세 이상 ~ 64세 이하
청 소 년	1,800원	1,200원	13세 이상 ~ 24세 이하
어 린 이	1,200원	600원	7세 이상 ~ 12세 이하 (초등학생 포함)
종로구민	·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		
한복착용자	·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한복착용자는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		
자매·우호도시 주민	·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매·우호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 50퍼센트 할인		

## 신·구조문 대비 표

개정안			수정안								
[별표 2]			[별표 2]								
<b>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관람료 (제7조 관련)</b>			<b>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관람료 (제7조 관련)</b>								
구분	금액		비고	구분	금액						
	개인	단체(20명 이상)			개인	단체(20명 이상)					
어른	3,000원	1,800원	25세 이상 ~ 64세 이하	어른	3,000원	1,800원	25세 이상 ~ 64세 이하				
청소년	1,800원	1,200원	13세 이상 ~ 24세 이하	청소년	1,800원	1,200원	13세 이상 ~ 24세 이하				
어린이	1,200원	600원	7세 이상 ~ 12세 이하 (초등학생 포함)	어린이	1,200원	600원	7세 이상 ~ 12세 이하 (초등학생 포함)				
종로구민	·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					종로구민	·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				
한복착용자	·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한복착용자는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					한복착용자	·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한복착용자는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				
<u>자매도시주민</u>	· 종로구와 자매도시 체결한 도시 거주민 50퍼센트 할인					<u>자매·우호도시주민</u>	·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매·우호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 50퍼센트 할인				